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봉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55

발의연월일: 2020. 6. 23.

발 의 자:전봉민·양금희·황보승희

박대수・정동만・이종배

이종성・조수진・김예지

김상훈 · 윤재옥 · 서정숙

이주환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 및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여성 및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하고 있으나, 위 과세특례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.

그런데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출산이나 육아 등의 사유로 노동시장을 떠났던 경제활동인구의 복귀를 지원하는 위 과세특례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. 특히,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고용이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 여성과의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필요함.

이에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및 육아휴직자 복직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3년간 연장하고 경력단절 여성과의 계약기간에 따른 세액공

제비율을 차등화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 및 육아휴직 복귀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고자 함(안 제29조의3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0년 12월 31일"을 "2023년 12월 31일"로, "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(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)에 상당하는"을 "제2항에 따라 계산한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0년 12월 31일"을 "2023년 12월 31일"로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- 1. 고용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: 100분의 30(중견 기업의 경우 100분의 15)
- 2. 1호의 기간이 경과한 달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: 100분의 35(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0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29 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
제29조의3(경력단절 여성 고용	제29조의3(경력단절 여성 고용	
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) ①	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) ①	
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		
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		
하는 여성(이하 이 조 및 제30		
조에서 "경력단절 여성"이라		
한다)과 <u>2020년 12월 31일</u> 까지	<u>2023년 12월 31일</u>	
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		
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		
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		
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	제2항에 따라 계산한	
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		
비의 100분의 30(중견기업의		
<u>경우에는 100분의 15)에 상당</u>		
<u>하는</u>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		
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		
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		
서 공제한다.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
<u> <신 설></u>	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	
	액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	
	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	인건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	

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"육아휴직 복귀자"라 한다)을 2 020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 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 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 건비의 100분의 10(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)에 상당하 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 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다만,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세연

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
<u>다.</u>
1. 고용한 날부터 1년이 되는
날이 속하는 달까지: 100분의
30(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
<u>15)</u>
2. 1호의 기간이 경과한 달 1일
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
는 달까지: 100분의 35(중견
기업의 경우 100분의 20)
3
2
- 023년 12월 31일

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 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 니한다.

1. ~ 3. (생 략)

<u>③</u> ~ <u>⑥</u> (생 략)

1. ~ 3. (현행과 같음) ④ ~ ⑦ (현행 제3항부터 제6

ㅡ ㅡ 항까지와 같음)